

광주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가단52137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1. A

2. B

3. C

변론 종결 2017. 3. 14.

판결 선고 2017. 4. 1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4.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D 사이에 2014.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9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이하 '보루네오가구'라 한다)와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판매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채무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보루네오가구, 보험기간 2012. 12. 1.부터2014.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 85,000,000원'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 F, G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 의해 보증되는 소외 회사의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가 보험금을 보루네오가구에 지급한 경우 소외 회사와 그 보증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지급일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후부터는 연12%)]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가 보루네오가구에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 17.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3. 20.피보험자인

보루네오가구에게 보험금 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13. 현재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합계 103,374,720원(=원금 85,000,000원+ 미수이자 13,134,240원 + 미수금잔액 5,240,480원)에 이른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2. 12. 1. F과 함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보루네오가구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D은 2014. 1. 25. 피고 B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4. 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5.자 매매1)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은 피고 B과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유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피고 B은 2014. 3. 2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 C은 2014.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F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피고 A, F은 소외 회사의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고(대법원 2008. 6.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보루네오가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8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공동보증인인 피고 A에 게 피고 A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A은 3인의 공동보증인중 1인으로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보루네오가구에 지급한 보험금 85,000,000원 중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8,333,333원(=85,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상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그에 따라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약정 지연손해금청구 중 앞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원고의 구상권 행사는 소외 회사와 보루네오가구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소외 회사와 보루네오가구 사이에 구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동보증인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할 것이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 B,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99,000,000원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9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이 사건 보험계약은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4. 1. 17.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2015. 3.20.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D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평소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 H으로부터 리모델링을 통한 전매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아 2014. 1. 25.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D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전매를 위해 매수하였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피고 C에 게 다시 매도한 것일 뿐, D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피고 C도 D, 피고 B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H을 통해 거주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D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앞에서 든 각 증거들, 을나 제1 내지 7호증, 을나 9 내지 17호증, 을다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B은 리모델링을 통한 부동산 전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매물을 알아보던 중 이 사건부동산 단지 앞에 사무실이 있는 공인중개사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아 2014. 1. 2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3,000,000원에 매수하고,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2014. 1. 27. 73,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14. 1.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 B은 2014. 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약 6,5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사실, ③ 피고 B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공인중개사인 H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거주 목적으로 집을 찾고 있던 피고 C이 신문 광고를 보고 H에게 연락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았고, 2014. 3.2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9,000,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2014. 4. 8. 39,900,000원(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음)을, 2014. 4. 8. 49,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4. 4. 8.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 C은 2014. 4. 7.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⑤ D, 피고 B, C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알게 된 사이인 사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각 매매대금이 당시의 시세에 비해 특별히 낮게 정하여졌다고 볼 자료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각각 D와 일면식도 없던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당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거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들이 D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가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선의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서구 I, J, K, L, M, N, O, P, Q, R, S, T에 있는 U아파트 제303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V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9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제606호

철근콘크리트조

59.9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광주광역시 서구 J 대 1174㎡

2. 광주광역시 서구 I 대 4031㎡

3. 광주광역시 서구 K 대 754㎡

4. 광주광역시 서구 L 대 154㎡

5. 광주광역시 서구 M 대 1249㎡

6. 광주광역시 서구 P 대 53㎡

7. 광주광역시 서구 R 대 660㎡
8. 광주광역시 서구 S 대 45㎡
9. 광주광역시 서구 T 대 34㎡
10. 광주광역시 서구 N 대 253㎡
11. 광주광역시 서구 O 대 3605㎡
12. 광주광역시 서구 Q 대 194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13956분의 28.3716

- 끝 -

1) 을나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2014. 1. 25.임에도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사의 착오로 '2013. 1. 25.자 매매'로 등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